

2026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융자추천 규모 및 융자은행 : 126억원

- 중소기업 : 100억원
- 소상공인 : 26억원 [특례보증 18억원, 일반(부동산)보증 8억원]
- 협약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부평구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제조업체
 - 공장건축면적 500m²이하 기업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 등이면 가능
- 소상공인 : 부평구 소재

전업율(제조업매출/총매출×100) 30% 이상인 기업

3. 융자추천 한도 및 융자조건

구 분	융자추천 한도	융 자 기 간	이자차액보전
중소기업	4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4회 균등분할 상환)• 4년(1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 5년(2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 ↳ 관외전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한함	1.5~2.5%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3.0%

* 운전자금 업체별 한도액 잔액이 남은 업체는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고정 및 변동 금리는 기업체 자율선택)
- 대출신청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하나 차기 융자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음
 - *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이율의 총합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보전이율	지원 조건
1.5%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 대상이 아닌 기업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운전자금 수혜기업(최근 5년 이내)
	연매출 10억원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자가공장 소유업체 적용 제외)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연매출액 10억 이상일 경우 적용 제외) 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한 기업(기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 [(사)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부평구경영자협의회, (사)중소기업융합 인천부천김포연합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지정업체)
2.0%	부평구 구민상(산업증진분야) 및 중소기업인상(경영·기술)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녹색제품인증 제조기업(환경부 한국산업기술원 및 자원순환협회 지정) 제조업 관련 우수 기술개발업체 [특허·실용신안 등록 완료 2건 이상, 신기술(NET)·신제품(NEP) 1건 이상 받은 기업]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정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지정업체)
2.3~2.5%	2025.1.1. 이후에 부평구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거나 창업한 업체 •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 : 2.3% • 매출액 10억 이상 기업 : 2.5%
추가보전이율 0.5%	재해 및 화재의 피해를 입은 기업(피해 복구기간 지원)
	국가지정 감염병으로 인한 조업중단·수출입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2025.1.1. 이후에 부평구에 200만원 이상 지정기부한 기업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
	2025.1.1. 이후 신규로 부평구민을 2명 이상 채용한 기업(1년 이상 고용 시)
	2025.1.1. 이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부평구에 공장을 등록한 후 20년 이상 운영한 장수기업
	출산 지원기업(2025년도 출산 축하 비용 및 출산 부조금 등 복리후생비 지원 기업)
	ESG경영기업(ESG관련 인증기업)

- ※ 고용조건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기간 동안 고용조건을 유지하여야 함.
- ※ 출산 지원기업은 기업의 복리후생비 중 출산장려 정책에 부합하는 경비(출산 비용 및 출산 부조금 등)를 지출하고 재무제표 및 계정원장에 등재하여 이를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전년도 실적에 한함)

4. 지원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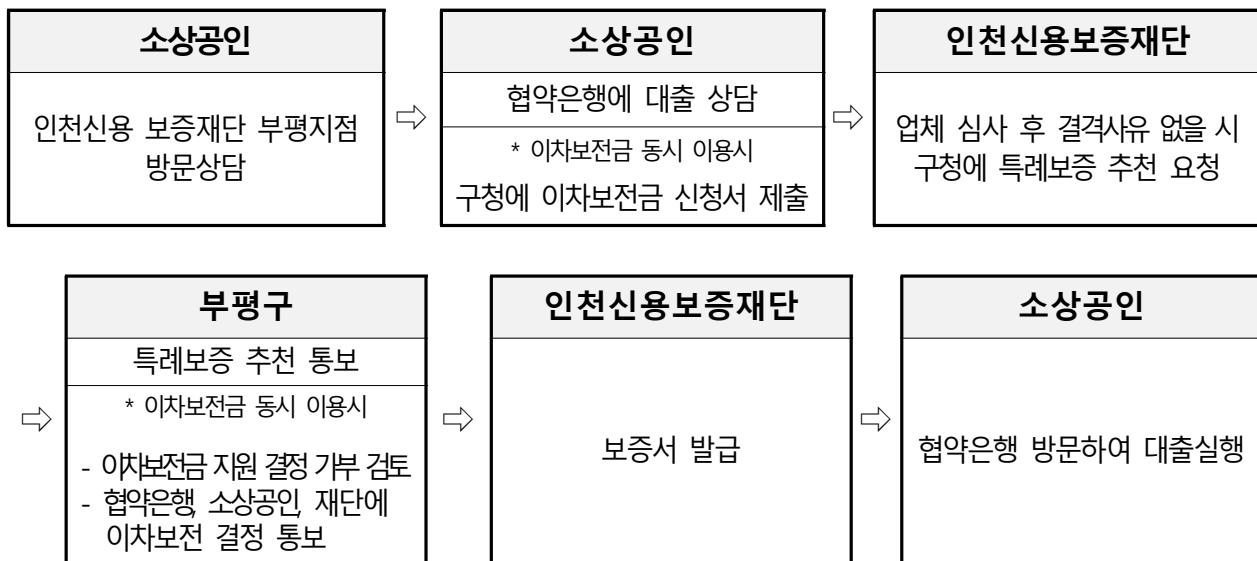
구 분	지원제외 사유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평구로부터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받고 상환중인 기업으로 한도액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기업 ○ 무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 <p>※ 중소기업은 인천시 자금 증복 수혜 시 특별 우대 없이 이차보전요율 <u>1.5%</u> 적용</p>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휴·폐업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차·향락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

5. 신청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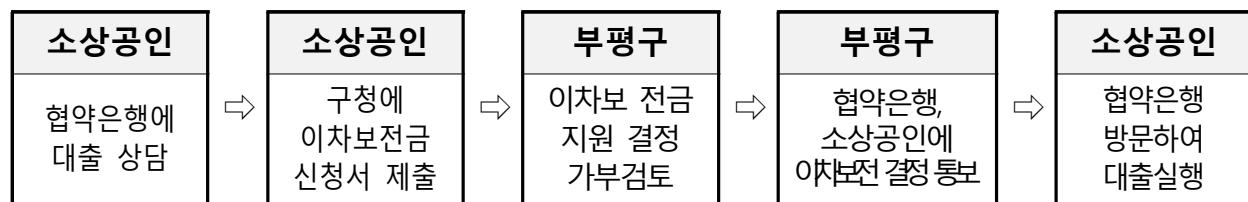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지원절차
 - 중소기업



- 소상공인(특례보증)



- 소상공인(일반보증)



○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6층)

○ 문의안내 : ☎ 032-509-6572(중소기업), ☎ 032-509-6568(소상공인)

6. 제출서류

가. 중소기업

구 분	서류 및 요건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중소기업) 및 사용계획서	[서식 1]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반환 이행각서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건축물대장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국세·지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조건증명서류	해당 우대 조건 증빙서류	

나. 소상공인

구 분	서류 및 요건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소상공인) 및 사용계획서	[서식 2]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반환 이행각서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국세·지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7. 우대조건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 서류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고용노동부 인증)
부평구 중소기업인상 및 구민상(산업증진분야) 수상기업	수상관련 증빙자료(최근 3년이내)
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 기업	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 증빙자료
우수 기술개발업체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등
녹색제품인증 제조기업	환경표지제품 인증서(환경부 한국산업기술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지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증)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계약서류 등
비전·유망기업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부평구 전입기업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이전날짜 표기)
자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개인 : 사실증명원 1부 (이전날짜 표기, 세무서 발급)

구 분	제 출 서 류
기부기업	부평구 지정기탁 기부확인서(2025. 1. 1. 이후)
고용기업	고용사실 증빙자료(2025. 1. 1. 이후) - 고용보험료 월별 납부 자료,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고용인원 확인 가능 서류 -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 - 기타 고용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재해기업	재해기업 확인증(중소기업청 고시) 화재사실 증명서(소방서, 보험회사 발급) 감염병 피해기업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ESG경영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 ESG인증서(확인서)

8. 유의사항

- 운전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은 협약은행에 융자 추천을 하여 협약은행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협약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 추천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 보전이 어려울 때는 협약은행으로부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금리는 은행별 심사기준과 신용에 따라 금리가 상이하므로 협약은행의 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여 대출은행을 선택하기 바람
-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 (부동산 구입, 개인채무 상환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됨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 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를 대출은행과 구애 제출
- 융자 후 휴·폐업 또는 부도, 타 시·군·구로 이전할 경우(본사 또는 공장) 이차 보전금 지원 중단됨
- 상환 기간 연장은 대출은행에서 가능하더라도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초 신청시 대출기간 내에 한함
- 추가보전이율(0.5%)은 해당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함
- 필요 시 융자금의 사용실태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 운송업	501
항공 운송업	51
화물 취급업	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신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2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 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 서비스 산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 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 매출)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 포장 및 충전업 등